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396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21일

발의자 : 방미숙 의원

1. 제정이유

하남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제7조)
-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 21. ~ 1. 26.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p>본인은 상속채무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재산확인, 주민등록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p>하남시장 귀하</p> <p>※ 제출서류 :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p>			

[별지 제2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접수일)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대 리 인				
신 청 내 용				
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 과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